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 EU 인공지능 법안의 쟁점

- 시민사회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요 경과

---

- 2021.4.21. EC, AI Act 제안 발표
- 2021.6.18. 유럽 개인정보감독기구(EDPB-EDPS) [공동 의견서](#) 제출
- 2021.11.30. [시민사회 성명](#) - 기본권을 위한 EU 인공지능 법안
  - Access Now, EDRI, Amnesty International, Article 19 등 123개 유럽 및 국제 시민사회 서명
  - 본 문서는 2021년 8월에 제출된 [ACCESS Now의 의견](#)을 주로 참고함.
- 2022.5.3 AI Act에 대한 [시민사회 수정제안](#) 발표
- 2022.12.6.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 AI Act에 대한 [공통 입장문](#)(일반적 접근) 채택
- 2023.6.14. 유럽의회 AI Act에 대한 [수정안\(협상안\)](#) 채택

# 시민사회 성명 - 기본권을 위한 EU 인공지능 법안

---

9가지 목표 달성 보장을 촉구함.

1. AI 시스템의 위험에 대한 일관되고 유연하며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 채택
2. 기본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AI 시스템 금지
3.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책무성을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의무 포함
4. 일관되고 의미있는 공공 투명성 확보
5.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의미있는 권리 및 구제조치
6. AI 수명주기 전반에서 접근성 보장
7.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보호
8. AI 시스템을 위한 개선되고 미래지향적 표준
9.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진정으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안

# 시민사회 수정제안

---

- 위험기반 시스템의 업데이트
-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장소에서 원격생체인식의 금지
- 예측 치안의 금지
- 이주 및 국경 맥락에서 인공지능 이슈
- 감정 인식
- 생체 분류
- 사용자에 대한 의무 및 기본권 영향평가
- 일관되고 의미있는 공공 투명성 보장
- AI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 및 구제
- 모든 AI 시스템을 위한 수평적이고 주류화된 접근성 요구조건 보장
- AI 시스템을 위한 지속가능성 투명성 조치
- 생체인식정보의 고위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 군사 및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명확한 안전조치 설정
- 표준 및 표준화 절차

# 제5조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 조항의 문제점

---

- 금지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 5조 1(a), 1(b), 1(c)
-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공간에서의 실시간 원격 인식 (5(d)) : 지나치게 적용 범위 제한, 법 집행 기관에 폭넓은 예외 인정
-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의 사례 추가 필요
- 금지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 미래에 사례를 추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 부재

# 금지되는 인공지능 : 제5조 1(a)

제5조 1(a) 당사자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사람의 의식을 벗어난 잠재의식 기술(subliminal techniques)을 활용하는 AI 시스템의 출시, 서비스 개시 또는 사용

- 당사자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무관하게, 잠재의식 기술을 활용하여 행동을 왜곡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금지 필요

의회안 제5조 1(a) 설명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현저히 손상시킴으로써 **그 사람 또는 집단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시키려는 목적이나 그러한 효과를 위해 사람의 의식을 넘어서는 잠재적 기술 또는 의도적으로 조작적이거나 기만적인 기술을 배치하는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이로 인해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첫 번째 항에 언급된 잠재의식 기술을 배포하는 AI 시스템의 금지는 해당 시스템에 노출된 개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법적 보호자의 구체적인 사전 동의에 근거하여 승인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AI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금지되는 인공지능 : 제5조 1(b)

제5조 1(b) 당사자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행동을 중대하게 왜곡하기 위해, 그들의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는 AI 시스템의 출시, 서비스 개시 또는 사용

- 연령 및 장애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 성별, 건강, 성적취향 등 모든 차별금지 사유로 확대
- ‘중대하게 왜곡’하거나 ‘피해’를 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약성을 악용’ 하는 것만으로 금지 필요

의회안 제5조 1(b) 해당 개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나 그 집단과 관련된 사람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할 목적을 가지고 혹은 왜곡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성격 특성이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알려지거나 예측된 특성 등 해당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금지되는 인공지능 : 제5조 1(c)

제5조 1(c) 자연인의 사회적 행동 또는 알려지거나 예측된 개인적 특성 또는 성격 특성을 토대로 **일정 기간**에 걸쳐 그의 **신뢰성**을 평가 또는 분류하기 위한, **공공 기관**에 의한 또는 그를 대신한 AI 시스템의 출시, 서비스 개시 또는 사용. 단, 사회적 점수가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이어지는 경우.

- (i) **데이터가 처음 생성되거나 수집된 맥락과 무관한**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자연인 또는 전체 집단의 차별 또는 불리한 대우
- (ii) 그들의 **사회적 행동 또는 그 중대성에 비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특정 자연인 또는 전체 집단의 차별 또는 불리한 대우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 사회적 점수는 신뢰도 뿐만 아니라 자격, 반사회적 행동, 미래 범죄 등 다양한 측정의 지표로 사용 가능함
- 일정 기간에 대한 평가로 제한할 이유 없음
- (i) (ii)의 제한 조건과 상관없이 차별 또는 불리한 대우는 기본권을 침해함

→ EDPS-EDPB 모든 유형의 사회적 점수 금지

의회안 제5조 1(c) 사회적 행동 또는 알려지거나 **추론** 또는 예측된 개인적 또는 성격적 특성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연인 **또는 그 집단의 사회적 점수 평가 또는 분류**를 위해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사회적 점수가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을 경우:



# 금지되는 인공지능 : 제5조 1(d)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의 원격 생체인식

제5조 1(d) **법 집행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단,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해 그러한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i) **실종 아동**을 포함한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표적 수색
- (ii) 자연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임박한 **위협 또는 테러** 공격의 방지
- (iii) (생략) 3년 이상의 최대 기간 동안 구금형 또는 구금 명령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의 범인 또는 용의자 탐지, 소재 파악, 식별 또는 기소.

- '실시간'과 '사후' 원격 생체 인식(RBI)의 구분은 기본권의 관점에서 거의 의미가 없음
- 법집행 용도로 제한하는 문제 → EDPS-EDPB,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사람의 특징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한 AI 일반적으로 금지 + 온라인 공간에서 대규모 원격 식별을 위한 AI 금지
- 법집행 목적의 예외적 허용 : 금지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 특히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 → EDPS-EDPB, 범죄 용의자 또는 가해자의 잠재적인 수는 거의 항상 용의자 탐지를 위한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높을 것

의회안 제5조 1(d)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 금지되는 인공지능 : 추가 금지 사항

---

- 생체인식 분류 AI

- EDPS-EDPB,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 모두에 대해 개인의 생체 인식(예: 얼굴 인식)을 통해, 정치적 또는 성적 지향 또는 헌장 제21조에서 금지하는 기타 차별의 근거 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에 따라 클러스터로 분류하는 AI 시스템 금지 요구
- 생체인식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이 안되는 생리적, 행동적, 생체정보 포함해야

- 감정인식 AI

- 신체적, 생리학적, 행동적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혹은 집단의 감정이나 의도를 식별, 추론하기 위한 AI
- EDPS-EDPB 역시 금지 권고 (다만, 연구 및 건강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 국경 및 이주 통제, 예측 치안, 미래 범죄/위반/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사용되는 AI

- 현재 부속서 III의 6항 및 7항 고위험 AI로 분류
- EDPS-EDPB, 이러한 AI는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경우, 경찰 및 사법적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영향을 받는 사람을 대상화함.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임.

# 생체인식 분류의 정의

EC안 3(35)조.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biometric categorisation system)'은 자연인의 생체인식 정보를 토대로 **성별, 연령, 머리 색, 눈동자 색, 문신, 민족, 성적 또는 정치적 지향** 등의 범주를 할당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 생체인식(biometric) 개념의 사용 → 개인식별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제한
- 성별, 민족 및 성적 또는 정치적 성향 : 신체적, 생리학적 또는 행동적 데이터에서 추론할 수 없으며 추론해서는 안되는 범주
  - Michal Kosinski의 인종차별적 우생학 이론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성적 취향, 정치적 성향 추론이 가능함을 주장
  - 정치적 성향이 생리학적 데이터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 결정론

→ 성격, 사회적 그룹화, 명확하게 생리학적이지 않은 사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추론 금지해야

의회안 3(33a) - (33a) '생체인식 기반 데이터'는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또는 행동 신호와 관련된 특정 기술 처리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3(35)조. '생체인식 분류(biometric categorisation)'는 자연인의 생체인식 정보 및 **생체인식 기반 데이터**, 또는 이들 데이터로부터 추론된 데이터를 토대로 그들의 범주를 할당하거나 그들의 특성 또는 속성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감정인식 시스템

- 고위험 분류: 부속서 III 6(b) "**법 집행 당국이 거짓말 탐지기 및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AI 시스템**", 7. **이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의 맥락**에서 권한있는 공공 기관이 **거짓말 탐지기 및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AI 시스템**
- 다른 감정인식 시스템은 제52조 투명성 의무의 준수만 요구

- Paul Eckman의 '기본 감정' 이론에 기반
- 감정인식 시스템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
- 실제 감정 추론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권에 부정적 영향



출처 : <https://learn-to-read-emotions.com/>

- 시위대에서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사람들을 사전에 체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될 때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수정하도록 압박
-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항의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한 인권 침해

## → 감정인식 시스템의 금지

\* EDPB-EDPS :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EU의 본질적 가치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AI 시스템 금지 권고

# 제52조 특정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2조 1. 제공자는 자연인과 상호 작용하는 AI 시스템이 해당 자연인이 AI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개발되도록 보장한다. (생략)

2. 감정 인식 시스템 또는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의 사용자는 그에 노출되는 자연인에게 시스템의 작동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는 범죄 행위의 탐지, 방지, 수사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생체 인식 분류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기존의 사람, 물체, 장소, 기타 실체 또는 사건과 현저히 유사하고 마치 진본처럼 보이는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딥 페이크') AI 시스템의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 (이하 생략)

## •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어도 권리 보호에 불충분

- 환자에게 자살을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챗봇
-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
- 감정인식 및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에 의한 권리 침해

## ➔ 제52조로 해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위험 혹은 금지된 인공지능으로 분류

생체인식(biometric) 데이터에 한정되지 않도록 감정인식 및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의 정의 수정

# 금지되는 인공지능 : 추가 금지 사항

의회안 제5조 1(b a) 민감하거나 보호되는 속성 또는 특성에 따라 자연인을 분류하거나 이러한 속성 또는 특성을 추론하여 분류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이 금지 조항은 노출되는 개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법적 보호자의 구체적인 사전 동의에 기반하여 승인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AI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a) 자연인의 프로파일링 및 자연인 또는 자연인 집단의 위치 및 과거 범죄 행위를 포함한 성격 특성 및 특징을 평가하여 자연인의 **범죄 또는 재범 위험을 평가**하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범죄 및 행정 위반의 발생 또는 재발을 예측**하기 위해 자연인 또는 그 집단의 위험을 평가하려는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d b) 인터넷 또는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비표적 스크래핑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d c) **법 집행, 국경 관리, 직장, 교육 기관의 영역**에서 자연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d d) '**사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의 녹화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서비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만,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사법적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 법 집행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TFEU 제83조(1)에 정의된 특정 중범죄와 관련된 표적 수색에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 금지되는 인공지능 : 기준 및 5조 업데이트 메커니즘

---

- 제5조 목록의 **업데이트 메커니즘** 필요

-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려 / 부속서 III의 고위험 사용 목록 업데이트 메커니즘은 존재(제7조)

-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의 기준** 제시, 예를 들어

-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이 기본권, 민주주의 또는 법의 지배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기본권, 민주주의 또는 법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는 경우
- 기술적 수정, 절차 및 법적 안전 장치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
- 위험이 소외된 그룹에 불균형적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본권, 민주주의 또는 법치에 미치는 위험이 너무 심각하여 낮은 확률도 용납할 수 없는 경우.
- 애플리케이션이 절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어떤 기관이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는 쟁점 : (독립적인!) 유럽인공지능위원회(EAIB) ?

# 고위험 AI 시스템

---

- 고위험 AI로 분류한다고 그 자체로 합법적이며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GDPR 및 EUDPR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제안서 챕터3 2장에 포함(EDPS-EDPB)
- 부속서 III(독립형 고위험 시스템)의 제목 목록의 업데이트 메커니즘이 없음 (제7조)
  - 새로운 시스템을 부속서 III에 추가할 수 있지만 기존의 1~8번 항목에 나열된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경우에만 가능

## 의회안

- 제7조. 현행 부속서 III의 열거된 분야에 구속되지 않고 부속서 III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속서 III의 1에 (a a) **감정 인식 시스템**을 포함하여 생체인식 또는 생체인식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인의 개인적 특성을 추론하는 데** 사용하려는 AI 시스템(단, 제5조에 언급된 것은 제외) 포함.



# AI 시스템 사용자의 의무 강화

## 제29조에 따른 AI 시스템 사용자의 의무

- 제공된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사용할 것
- 입력 데이터가 고위험 AI 시스템의 원래 목적에 비추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 AI 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위험 또는 오작동을 발견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제공자, 유통업자에 통지
- 자동생성 로그를 보관할 것
- (적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수행 의무

• 특정 상황에서 특정 목표를 가진 AI 시스템의 배치는 기본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AI 시스템 제공자가 모든 위험을 예측하는 불가능 (EDPS-EDPB)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위험 AI에 대해 어떠한 영향평가도 수행할 의무가 없음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고위험 AI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의무화 필요 +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적용.

→ 제64조(3)에 따른, 관할 기관이 고위험 AI 시스템 감독을 위해 필요한 문서에 접근할 권한은 사용자가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에도 적용되어야 함.

# AI 시스템 사용자의 의무 강화

의회안 제3조 : 사용자(user)를 **배치자(deployer)**로 변경

의회안 제29조

- AI 시스템에 대해 인적 감독 실시, 감독을 위한 역량과 자원 보장, 사이버보안 등 배치자의 의무
- 입력 데이터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보장해야 함
- 위험 혹은 오작동이 있을 경우 제공자, 유통업자 뿐만 아니라 국가감독기관에도 통지
- 최소 6개월동안 로그 보관
- 작업장에서 고위험 AI를 사용하기 전에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게 고지**
- **공공기관**인 고위험 AI 시스템 배치자는 제51조 **등록 의무**(제60조 데이터베이스 등록) 준수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의 요약 공개
- 자연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 대상인 자연인에게** 의도된 목적과 결정 유형, 설명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 국가 관할 당국에의 **협력 의무**

의회안 제29조a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영향평가**) 신설 : 고위험 AI (부속서 III의 2항(중요 인프라의 관리 및 운영)의 시스템 제외)의 배치자는 특정 사용 상황에서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함.

#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 제60조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제51조에 따라 등록되고 제6(2)조에 언급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EU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2. **제공자**는 부속서 VIII에 열거된 데이터를 EU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한다. (생략)
3. EU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고위험 AI 시스템이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되는지임.
- 공공기관이 고위험 AI를 사용할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알권리를 더욱 보장받아야 함

→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의 모든 사용을 등록하도록 확장되어야 함

→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 조달 맥락에서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영향 평가의 완전한 공개 필요

→ 민간 부문의 영향평가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 필요

의회안 51조 : **공공기관 및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인 배치자는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함. 그 외 배치자는 자발적으로 등록.

60조 : 부속서 VIII은 제공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A) 뿐만 아니라 배치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B) 포함

부속서 VIII : 배치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요약 포함

# AI 규제 샌드박스

**제53조 AI 규제 샌드박스** 1. 하나 이상의 회원국 관할 기관 또는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 의해 설립된 AI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한 계획에 따라 혁신적인 AI 시스템이 출시되거나 서비스 개시되기 전에 제한된 시간 동안 개발, 테스트, 검증할 수 있는 통제 환경을 제공한다. (이하 생략)

**제54조 AI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해 특정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 데이터의 추가 처리**

1. AI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다른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특정한 혁신적 AI 시스템을 개발·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다.

(a) 다음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상당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i) **관할 기관의 통제와 책임 하에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와 방지를 포함한 범죄 행위의 방지, 수사, 탐지 기소, 또는 형사 처벌의 집행.** 이러한 처리는 회원국 또는 유럽 연합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ii) 질병 예방, 통제, 치료를 포함한 공공 보건 및 공공 안전

(iii) 높은 수준의 환경의 질 보호 및 개선 (이하 생략)

- AI 규제 샌드박스는 위험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무법지대'가 아니라 해로운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규제 조사의 기회가 되어야 함.
- 제54조의 추가처리가 개인정보보호 침해할 위험 우려. 특히 54(1)(a)(i)조.

→ 54(1)(a)(i) 삭제 / AI 규제 샌드박스의 사용에 대한 최고 수준의 공개 조사 및 투명성 보장

의회안에서 54(1)(a)(i)의 내용은 삭제됨

# AI Act 의 집행 (거버넌스)

- EU 인공지능위원회(EAIB), 국가감독기관의 임명 관련 명확성 부족

- EDPS 및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책임 및 권한과 혼란 야기 우려

- EDPS-EDPB의 권고 지지, 개인정보 감독기관(DPA)을 국가감독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

- EAIB의 역할, 구조, 독립성에 대한 우려

- 다음과 같은 EDPS-EDPB의 권고 지지

- EAIB에 더 많은 자율성 부여

- 국가감독기관 간의 협력 메커니즘 및 AI 시스템별 단일 연락소 보장. 여러 회원국에 걸쳐 있을 경우 EAIB가 감독기관 지정.

- EAIB는 EC에 조언 및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체 주도로 행동할 권한 및 법적 지위 보장. 특히 고위험 AI 관련 부속서 III 의 개정안을 EC에 제안할 권한.

- 기본권청에 EAIB의 참관자격 부여

의회안. 유럽인공지능위원회(EAIB) 대신에, 유럽연합의 독립적인 기구로 유럽 인공지능 사무국(European AI Office) 설치.

#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구제

---

- 고위험 AI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그룹의 불만을 완화,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 부족
  - AI 맥락에서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권리(right to reasoned decision)의 적용
  - 개별 불만(complaint) 제기 메커니즘 보장 필요

의회안. (8a) '영향을 받는 사람'의 정의(AI 시스템의 적용을 받거나 기타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자연인 또는 자연인 집단) 신설

제68a조 국가 감독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Right to lodge a complaint) 신설

제68b조 국가감독기관에 대해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신설

제68c조 개별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 기타 의견

---

- AI 수명주기 전반에서 접근성 보장

- 유럽 접근성 법에 따라 AI 관련 정보 및 사용설명서를 포함하여 위험 수준에 관계없이 AI 시스템에 대한 수평적이고 주류화된 접근성 요구사항 포함

-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보호

- 위험 수준에 관계없이 AI 시스템의 자원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대한 수평적, 공개적 투명성 요건 도입

- AI 시스템을 위한 개선되고 미래지향적인 표준

- 조화 표준은 기술적 측면에 국한하고, 편향성 완화 등 비기술적 문제는 입법으로.
- 표준 제정 과정에 감독기관 및 시민사회의 참여 필요.

- 포괄적인 적용

- 대규모 EU IT 시스템에 대한 면제 삭제, EU 외부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EU 기반 AI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EDPB-EDPS의 주요 권고

---

- 법안 적용범위에 국제형사사법협력 부문이 배제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
- III편 2장(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에 GDPR 및 EUDPR의 준수를 보장하는 요구사항 포함
- 고위험 AI 시스템의 사전 적합성 평가를 항상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민간 포함 어떠한 형태의 사회신용점수 부여 금지
-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인적 특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의 사용 전면 금지
- 차별적 기준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하는 AI 시스템 금지
- 자연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한 AI 사용 금지
- 감독 및 집행 업무의 수행에 있어 감독기관의 독립성 명확히 확립
- 개인정보보호 기관들을 법안 제59조에 따른 국가 감독 기관으로 지정
- 유럽 AI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AI 위원회에 더 많은 자율성 부여



# EDPB-EDPS의 주요 권고

---

- 각 AI 시스템에 대해 법률에 의해 관련된 개인 및 기업을 위한 단일한 접촉점 보장 메커니즘
-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범위와 목표를 명확히 할 것 +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가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제에서 확립된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 인증 시스템과 EU 개인정보보호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 개인정보보호를 CE 마크 부여 요건으로 설정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들이 조화 표준 및 공통 규격의 준비 및 수립에 참여
- 행동지침(codes of conduct)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고려 명확히 할 것

---

감사합니다.